

##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칙(050202)

제정 2007. 7. 19. 세칙 제224호  
 개정 2008. 1. 16. 세칙 제239호  
 개정 2009. 2. 23. 세칙 제268호  
 개정 2009. 4. 28. 세칙 제281호  
 개정 2010. 3. 24. 세칙 제298호  
 개정 2012. 10. 25. 세칙 제360호  
 개정 2013. 9. 2. 세칙 제378호  
 개정 2017. 4. 24. 세칙 제464호  
 개정 2018. 3. 27. 세칙 제476호  
 개정 2019. 10. 24. 세칙 제515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4.2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10.24>

② 위원장은 계약담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09.4.28>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19.10.24>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19.10.24>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

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다만,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10.24>

③ 사장은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징구하여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19.10.24>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임계약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9.4.28>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안·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전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전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전

4.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19.10.24]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체결 등)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삭제 17.4.24>
6.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13.9.2>
  - 가. 발주의 필요성
  - 나. 중복발주 여부
7.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 <신설 18.3.27>
8.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추정가격이 70억 이상인 공사 계약(용역·물품 등은 20억 이상)에 한하여 심의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8.3.27>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10.24>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10.2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10.24>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담당이 되며 계약담당이사(과)가 있을 경우 분임계약담당이사(과)를 대행한다. <개정 09.4.28>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련분야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토

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자 또는 관련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0.24>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작성(별지 제4호 서식)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08.1.16, 09.2.23>

**제9조(심의안 부의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0.24>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안부서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사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문결과와 통지를 받은 사장 또는 관련담당자,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제3조의2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과 제척기파·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신설 19.10.24>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19.10.24>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공개)**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10.24]

**부 칙<07. 7. 19>**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 16>**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3>**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4. 28>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3. 24>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10. 25.>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9. 2>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4. 24>

이 세칙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3. 27>

이 세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10. 24>

이 세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제8조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자문) 요청서**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 표시)	공사, 물품, 용역
건 명			
추정가격	천원	발주시기	년 월
심의 (자문) 요청내용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	○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경기주택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에 <b>심의 (자문)</b>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발주부서명 :		(직인)	

【별지 제2호(제7조 제2항 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 출 일	제 출 기 관	건 명	상 정 일	심의결과

【별지 제3호(제7조 제2항 관련)】

## 회 의 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별지 제4호(제7조 제2항 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서

관리번호	
건명	
심의(자문)요지	
심의(자문)결과	



【별지 제5호(제8조 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통보서

관리번호	발주부서	건 명	심의결과	비 고

【별지 제6호(제2조 관련)】 <신설 19.10.24>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예 ( )	아니오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 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제2조 관련)】 <신설 19.10.24>

## 청 령 서 약 서

직 위 : ○○○○위원회 위원(장)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영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